

제 362 회 임 시 회  
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 
2025. 12. 1.(월)

# 검 토 보 고

## 【 환경산림국 소관 】

2. 충청남도 기후환경교육원 관리·운영 조례안  
- 충청남도지사 발의

보건복지환경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김운섭

# 충청남도 기후환경교육원 관리·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

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3일 충청남도지사가 발의한 안건으로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.

## 1. 발의 및 회부

- 가. 의안번호 : 제1433호
- 나. 발 의 자 : 충청남도지사
- 다. 발의일자 : 2025년 7월 3일
- 라. 회부일자 : 2025년 7월 4일

## 2. 개정 이유

- 환경교육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, 환경보전의식 함양 등을 위하여 건립하는 충청남도 기후환경교육원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

## 3. 주요 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관련 용어 정의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- 나. 교육원 교육방침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및 안 제4조)

- 다. 교육원의 개관 및 휴관, 이용시간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및 안 제6조)
- 라. 교육생 선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및 안 제8조)
- 마. 시설사용 신청 및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- 바. 사용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부터 안 제12까지)
- 사. 시설물, 비품 파손 등에 따른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  
(안 제13조)

#### 4. 검토 의견

- 기상청이 2024년 발표한 ‘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서비스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’의 결과에 따르면 국민 87%가 우리나라가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바, 기후 위기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충청남도 기후환경교육원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은 타당함.
- 안 제1조(목적)에서 환경교육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전의식 함양 등을 위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원의 공익성과 운영·지원의 적절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3조(교육방침)는 기후환경교육원이 이루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하여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교육 내용의 방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 조항으로 교육원 설립 취지를 담은 조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임.

- 안 제4조(운영)에서 도지사의 직영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 다 할 것이며, 위탁 시에도 제도적 명문화, 예산의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하여 교육원의 안정적 운영이 기대됨.
- 안 제5조(환경교육원의 개관 및 휴관)와 안 제6조(이용시간)에서는 휴관일 지정 및 이용시간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운영의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혼선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7조(교육생 선정)는 기관·단체·개인 대상 교육생 선정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선착순 선정 원칙과 수시 선정을 통해 도민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이바지할 것임.
- 안 제8조(교육훈련)에서 교육훈련 강사 및 외래강사 고용은 일자리 창출 및 도민들에게 환경 보호 의식을 함양시키려는 목적으로 수당 기준 명시로 교육 운영의 전문성과 예산 집행의 명확성 확보에 필요함.
- 안 제9조(시설사용)에서는 신청 절차, 승인 기준 및 수칙 위반 시 조치 근거를 명시하는 것으로 공공시설로서의 질서 유지 및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한 조항으로 교육원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임.
- 안 제10조(사용료 등)부터 안 제11조(사용료 감면 등)까지는 교육원 시설 사용료 및 기타 경비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경비 기준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여 유연한 사용료 책정이 가능하며, 감면 대상을 지정한 것은 교육원의 이용을 권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- 안 제12조(사용료 처리 등)에서는 교육원 사용료의 세입 처리 및 징수 기준을 명시하여 충남도의 예산 확보 및 예산 회계 절차의 투명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문으로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안 제8조 교육훈련에서 교육원이 기후환경 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담당하게 될 강사의 자격 요건 및 선정 방법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 되나 강사 채용 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며, 기존 강사가 아닌 외래 강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조건도 명확하지 않아 집행부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강사 선정 및 외부 강사의 고용이 도민들에게 양질의 교육 등을 제공 있도록 강사 자격 및 선정 기준, 강사료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